

1. 의결주문

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경고문구에 음주운전 내용을 추가하고 경고문구 외 경고그림을 표기하는 내용으로 「국민건강증진법」이 개정(법률 제20813호, 2025. 3. 18. 공포, 2026.3.19. 시행)됨에 따라, 경고문구의 표기대상 주류 규정을 정비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국민건강증진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대통령령 제 호

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 제목 “(경고문구의 표기대상 주류)”를 “(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의 표기대상 주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”을 “음주에 대한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<u>경고문구의 표기대상 주류</u>)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그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<u>음주는</u>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하는 주류는 국내에 판매되는 「주세법」에 따른 주류 중 알코올분 1도이상의 음료를 말한다.	제13조(<u>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의 표기대상 주류</u>) ----- ----- <u>음주에</u> 대한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----- ----- ----- -----.